

서울특별시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(성중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932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10월 16일

발 의 자 : 성중기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이은주, 이승미, 김상훈, 홍성룡,
이현찬, 정진철, 송아량, 유 용,
김평남, 최웅식, 김진수, 이석주,
김소양, 이성배, 여 명, 추승우
의원(16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「도로교통법」 과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은 대표적인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, 장애인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.
- 서울시는 「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」 를 통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바, 초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준비와 교통약자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전통시장을 포함하여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의 범위를 규정함(안 제2조)
- 나. 노인·장애인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(안 제4조)
- 다.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의 내 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와 관리의 내용과 방법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라.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,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

서울특별시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·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노인 보호구역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로서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.
 - 가.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의2 제1항제1호 ~ 제3호
 - 나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
2. "장애인 보호구역"이란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이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시장은 노인·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·개선과 노인·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- ② 시민은 노인·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수립 등) ① 시장은 5년마다 노인·장애인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
 2.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및 통행량,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 현황자료
 3.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의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·제8조에 따른 신호기·안전표지 및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제2조제5호에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항
 4.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
 5.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
 6.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내에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에 관한 사항
 7.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의 보행환경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그 밖의 사항
-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·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5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매년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청장,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련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필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6조(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)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·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·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노인·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규칙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
2.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
3. 노인·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지원 인력배치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·장애인의 통행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설치 및 관리

제7조(보호구역에서의 조치) ① 시장은 규칙 제9조에 따라 노인·장애인 보호 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,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을 우선 정비하여야 한다.

제8조(재정지원)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자치구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(정의)에서 노인 보호구역에 전통시장을 추가함에 따라,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 비용이 발생
- ※ 본 조례안의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기추진하고 있어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소요되지 않을 것임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 ≒ 1,342,595천원

- 총 비용 ≒ 1,342,595천원(연평균 268,519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합계
		-	-	-	-	-	-	-
세입	-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	-
세출	○ 전통시장의 노인보호구역 지정비용(안 제2조제1호)	268,519	268,519	268,519	268,519	268,519	268,519	1,342,595
	소계(b)	268,519	268,519	268,519	268,519	268,519	268,519	1,342,595
□ 총 비용(b-a)		268,519	268,519	268,519	268,519	268,519	268,519	1,342,595

다. 전제

- 서울시 전통시장은 총 351개소이나, 우선적으로 중대형 이상 전통시장 25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
 - '19년 노인보호구역은 여가복지시설, 의료복지시설, 공원 등에 17개소를 신규 지정하였고, '20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총 27개소를 신규 지정할 예정
- 5년간 균등 배분(5개소)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

라. 방법

- 전통시장의 노인보호구역 지정비용은 ‘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’ ‘20년 예산(1개소당 53,703,700원)을 적용하여 계산

마. 세부추계내역

- 전통시장의 노인보호구역 지정비용 ≒ 1,342,595천원

- 산출방식 $\sum_{i=1}^5 (\text{연도별 전통시장의 노인보호구역 지정비용})_i$

- 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1~2025년)

- 연도별 전통시장의 노인보호구역 지정비용 ≒ 268,519천원
= 노인보호구역 설치 단가 × 지정개소
= 53,704천원 × 5개소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분 석 관 이수아

☎ 02-2180-7944

e-mail : sua8873@seoul.go.kr